

2. 建設技術管理法 施行規則中 改正令

建設交通部令 第78號 1996. 9. 7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고속철도 등 초대형시설물의 건설공사에 외국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업자·감리전문회사·설계등 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자 등에 대한 부실벌점의 산정방법과 부실점수의 적용시기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5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준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8호 서식 및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30호 서식 내지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총괄표 및 부실벌점적용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자의 경우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2. 감리전문회사의 경우 : 건설감리협회

3. 설계등 용역업자

- 가.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의 경우 : 한국기술사회
- 나. 측량업자로 등록한 자의 경우 : 측량협회
-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자의 경우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4. 건설업자의 경우 : 대한건설협회

5. 주택건설등록업자의 경우(건설업자인 경우를 제외한다) :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 영 제46조의 2 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말한

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안전진단전문기관

2.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별표 14의 2의 요건을 갖춘 안전진단전문기관

별표 8 제3호 나목 중 “평균부실별점으로 하며, 당해연도의 평균부실별점은 각 반기별 평균부실별점을 합계하여 평균한다.”를 “평균부실별점으로 한다. 이 경우 1995년 10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은 이를 1반기로 본다.”로 한다.

별표 8 제3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누계평균부실별점은 당해 업체 또는 건설기술자 등의 최근 3년간의 평균부실별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으로 한다.

별표 8 제5호의 제목 “부실별점의 관리 및 적용”을 “부실별점의 관리 및 부실점수의 적용”으로 하고, 동표 제5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표 제5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부실별점과 부실점수는 매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월이 경과한 날부터 6월간 적용한다.

라. 부실별점과 부실점수를 불이익과 연계하여 적용하는 최초의 시기는 업체의 경우에는 1996년 9월 1일, 건설기술자 등의 경우에는 1997년 9월 1일로 한다.

[별표 14의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4의 2]

외국법인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제21조 제2호 관련)

구 분	요 건
자 본 금	1억원 이상(영리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 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기 술 인 력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2호 나목의 특급기술자 2인 이상 및 고급기술자 6인 이상
장 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별표 1의 정밀진단 안전장비

주택회보